

임시총회 소집공고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제15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임시총회(모바일투표)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4월 25일(월) 9:00 ~ 4월 27일(수) 17:00
2. 방 법 : 비대면 총회 (투표참여 문자발송)
*※ 모바일 투표로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부재자 투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안 건 : [안건1]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개정(안) 인준의 건
[안건2] 2022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안) 인준의 건

2022년 4월 13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 노동조합규약 개정 취지 >

1. 개정사유

- 2015년 1월 개정이후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체 교섭 갱신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실과 배치된 조문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노동조합 규약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상무집행위원회 토론과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며 제안된 개정의견 등을 수렴하여 규약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조합원]

- 조합가입 조건을 단체협약과 연동
 - 단협개정에 따른 규약개정 요인 최소화
- 조합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규정 신설
 - 현재 정지조합원, 후원회원 관련 규정 운영 중이나 규약근거 미약

[노동조합 기구]

- 총회, 대의원회, 상집,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노동조합 기구의 기능 및 구성요건 명확화
- 각종 기구 및 회의소집 공고의무 강화

[대의원회]

- 대의원의 선출인원 규정 변경
 - 10명당 1명<현원기준 8명 증원 필요> ▷ 20명당 1명
- 대의원의 상무집행위원 겸직 금지조항 신설 (당초 : 가능)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대표감사 지명권 : 위원장 ▷ 감사중에서 호선하여 선발

- 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의무조항 신설
 - ▶ 시정요구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 일상감사 금액 인상 : 2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 사업계획예산 내의 지출 중 대표감사 사전승인대상 금액 인상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문 신설
 -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규약에 규정함

[임원]

- 임원의 선출, 해임, 대행에 관한 절차 명확화
 -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2명 이내), 사무국장, 감사(2명 이내)

[부서]

- 노동조합 부서 설치, 기능에 관한 규정 명확화
 - ▶ 부서명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부서 임무만 규정하여 부서 설치, 해체, 명명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

[회계]

- 노동조합 회계 연도 변경
 - ▶ 당해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 ▷ 매년 1월1일~12월31일

[조합해산]

- 노동조합 해산 결의요건 완화
 - ▶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기타]

- 현실과 배치된 조문(유니온숍, 여성부 등) 또는 부적합 용어(근로▷노동, 교육계몽▷교육·훈련 등)의 정비

☞ 세부내용은 [첨부1]의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2022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내용>

1.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에 관한 건

가. 단체협약 제49조(휴가 등) 제2항 개정

-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 :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50%는 의무사용 한다. <삭제>

2. 적용시기 및 방법

가. 적용시기 : 본 협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나. 적용방법 : 당초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50%)를 2022년도 75% , 2023년 90%, 2024년 100% 사용으로 점진적으로 연차 휴가 확대사용

※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잔여액은 전액 하반기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임금인상 방안(정액, 정률, 정액+정률)은 대의원회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임금교섭에 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2]의 『2022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참조